



③ 갑은 을과 본 계약전 사전합의하여 판매대금 지급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**제3조 [판촉사원 파견]**

- ① 을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의 부담으로 제4조에 명시된 갑의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한다. 단, 본 매장 이외의 단기행사 참여 또는 바겐세일과 같은 특별행사시 추가 파견인원은 별도로 협의 결정한다.
- ② 제1항의 단기행사라 함은 주로 1주일 또는 10일 단위로써 1개월 이하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철회되는 행사를 말한다.
- ③ 갑은 본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4조 [최초 매장위치 및 면적]**

- ① 매장위치 :           층 (판촉사원       명)  
(매장간 구획 구분이 명확한 샵 매장의 경우 도면 별첨)
- ② 매장면적(공유면적 포함) :       ㎡(       평) (전용율 :       %)

**제5조 [마진율]**

① 마진율

구 분	정 상	할 인 행 사					비 고
마진율	%	%	%	%	%	%	

② 가격인하, 단기행사 등과 같이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·결정하며, 발주의뢰서 또는 매입전표로써 이를 같음한다.

**제6조 [광고활동 및 비용부담]**

- ①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구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갑이 시행하는 단체광고,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각각 적정하게 부담한다.
- ③ 을은 POP제작, 장치장식, 소풍백·포장지 제작, 기타 갑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.

**제7조 [인테리어 또는 비품의 설치]**

- ① 을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을의 비용으로 매장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.
- ② 을은 갑의 사전 동의를 득한 후 갑이 설치한 시설 이외에 고정시설, 비품, 매대, 집기 등을 을의 부담으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인테리어 공사를 을의 부담으로 한 매장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 점포위치 변경, 기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적정비용을 부담한다. 단, 제11조에 해당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8조 [통지 의무]**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1.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
- 2.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
- 3.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
- 4. 기타 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

**제9조 [사후 고객 관리를 위한 조치]**

① 갑은 을의 매장철수 이후 을의 판매상품에 대한 고객의 교환, 환불요구 등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을에게 (       )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거나 일정금액을 갑에게 예치토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(이하 "사후고객관리

를 위한 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지급보증을 위한 조치는 갑·을 합의하에 퇴점 1개월 전에 행할 수 있다.
- ③ 을이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증권을 퇴점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사후고객관리를 위한 조치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.

**제10조 [손해 배상]**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을은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[계약 해지]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1. 을이 파산, 부도 또는 회사정리 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
- 2. 을의 채무로 인하여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한 일반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(가압류, 가처분 포함)을 받은 경우
- 3.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의 생산이 종료된 경우
- 4. 판매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갑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착복하는 행위
- 5. 갑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품을 갑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행위
- 6. 을의 매출이 당해 점포 동일 상품군의 하위 15%에 해당되어 매출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출하게 한 이후 3개월간의 평균 매출이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
- 7.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명시된 판촉사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판촉사원의 수를 증감하여 갑이 상당기간(14일 이상)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**제12조 [중도 해지]** 본 계약을 중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3조 [계약 갱신]**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.

**제14조 [계약 변경 강요 금지]** 갑은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으로 다수의 점포위치를 동시에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기간중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5조 [일반 상관례]**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거나,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
**제16조 [분쟁]**

- ①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갑·을간 소송의 관할법원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②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거래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 제3의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.

**제17조 [계약 유효기간]**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
본 거래계약을 증명키 위하여 갑·을 쌍방은 상기 계약조항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199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갑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대한상의빌딩 615  
 주식회사 한국백화점  
 대표이사 홍길동       (인)

을 :